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 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4-007-176호

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4. 4. 24.

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가. 과 태 료 : 5,400,000원
 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 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- 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 - 가. 피심인은 참여 들이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 하도록 지도·감독한다.
 - 나. 피심인은 가명정보 처리시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·1)(사전준비→위험성 검토→가명처리→적정성 검토→안전한 관리 등 5단계)를 준수하는 등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*를 이행하도록 지도·감독한다.

- * (예시) 가명정보 처리기록 작성·보관, 원본정보와 분리 보관, 가명정보 안전조치 및 재식별 금지, 내부관리계획 수립, '가명처리 단계별 절차' 이행,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 방침에 공개 등
- 다. 피심인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현황을 재검토하여,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'참여 소속 '와 각각의 들이 보유한 접근권한을 필요최소한으로 조정한다.
- 라. 피심인은 참여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.
- 마. 피심인은 가.부터 라.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이 유

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「舊 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"舊 보호법")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
Ⅱ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정책국이 국민신문고 민원*('23. . .)을 처리하면서 피심인의 **舊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요청**('23. . .)함에 따라, 조사조정국

¹⁾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'24.2월) 10~38쪽

에서 조사를 실시('23.7.14.~10.16.)한 결과, 피심인의 舊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* 이 수집.생성하는 정보(회원정보 및 정보 등)가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여부를 질의

2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현황

피심인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등을 위해 시스템*(이하 ' ')을 운영하면서 회원정보 및 정보를 처리 하고 있다. * '14. 1월에 오픈하였으며. 현장점검일 기준 전국 개가 참여 중

개인정보파일 (개인정보처리시스템)	수집항목	수집일	수집목적	수집방법	보유기간	건수(명)

3. 사실조사 결과

가. 시스템 운영 관련 기초 사실

- 피심인은 「 빅데이터 사업」에 참여하는 들로부터 회원 정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추천 서비스 등에 이용하였다.
 - '14. 1월, ' 빅데이터 분석·활용 사업'을 개시, '14~'23년 기간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할 공모*
 - * 매년 4월경 지자체, 교육청 소속 및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신규 공모(참여 시 운영평가 10점 가점)
 - '14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 의 DB에서 회원 정보 및 정보를 매일 1회 업데이트(야간)

- 참여 들은 회원 원본정보를 토대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만 추출된 회원정보 및 정보를 피심인에 제공하였다.
- (회원정보) 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key*, 우편번호(세부 주소 없음), 생년(월일은 1월 1일로 고정), 성별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별도의 View Table을 생성하여 해당 정보만 제공
 - * 사용자key는 각 회원가입 순서대로 부여된 연번을 기반으로 생성되어, 동일인이라도 마다 각기 다른 연번값을 가지며, 일방향 암호화(SHA256 등)함

(그림 삭제)

<회원 정보의 원본 데이터와 수집 데이터 간 비교>

괴리머			
컬럼명	회원정보 Table	View Table(제공)	⇒수집 Table
사용자Key *자동생성번호	12345	3132333435	5cb403a99a1b72ec43
가족아이디	abc123	5343332313	feec2273d9894b701a7
이름	홍길동	X(미제공)	X(미수집)
생년월일	생년월일 2000-05-30 _{*월일}		2000-01-01
주소	주소 헬리오시티 203동 101호 X(미제공)		X(미수집)
우편번호	05698	05698	05698
성별	2	2	2
회원가입일	2010-05-01	2010-05-01	2010-05-01
정보수정일 2015-05-30		2015-05-30	2015-05-30
회원등급(기호)	0	0	0
제적일자	2020-05-30	2020-05-30	2020-05-30
탈퇴일자	2020-05-30	2020-05-30	2020-05-30

- **(정보)** 방식, 일시 등 회원별 행태 정보

<피심인이 각 으로부터 제공 받는 정보>

구 분	회원정보 수집 항목	데이터 수집항목
원본 제공항목	생년, 우편번호(집), 성별, 회원 가입일, 가입 코드, 등록 일시, 탈퇴일시	
(암호화 대상)	사용자key, 가족아이디key	사용자key

- 나. 보호법 적용 법리 : 가명정보 여부 및 당사자 적격 판단
 - (가명정보 여부) 참여 이 피심인의 지침에 따라 생성하는 회원 정보는 원본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보호법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가명정보에 해당하며,
 - ※ 피심인은 점검일 기준 '통계작성'을 목적으로 '가명처리'를 하고 있다고 소명
 - * (보호법 제2조제1호 다목)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 - 사용자Key 등이 일방향 암호화(SHA256 등) 되었더라도, 원본 DB와 결합 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안전조치 의무 등 가명정보 처리 특례(보호법 §28의2 ~ §28의5)가 적용된다.
 - **(당사자 적격) 피심인과 참여** 모두 가명정보 처리에 관여하므로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.
 - (참여) 보유한 회원 개인정보를 **가명 처리한 주체**이며, 에 **가명정보를 제공한 자**에 해당한다.
 - **(피심인)** 참여 으로부터 **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**에 해당한다.
 - (양자 간의 관계) 각 은 법령에 따라 상호 협력체계로 운영, 피심인을 정점으로 업무상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, 이 사건 시스템도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른 협력망의 일종으로 소속을 달리하는 참여(공모) 및 정보의 제공관계로 볼 수 있다.

(관련법령 삭제)

다. 가명정보 처리 특례 위반 관련 기초사실

- (접근통제) 피심인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소속 직원이 관리자 페이지에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할 때,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.
- (접속기록) 피심인은 관리자와 소속 직원들이 관리자페이지 및 DB에 접속한 기록을 일부 누락하여 보관·관리한 사실이 있다.
 -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기록에 아이디, 아이피, 접속일시를 기록하고 있으나, 수행업무 및 처리주체 정보를 누락 하였고, DB 접속기록은 보관·관리하지 않았다.
- (대장관리) 피심인은 참여 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라. 참여 의 보호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조치 검토

- 참여 도 가명정보 생성·제공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 하지 않았을 가능성*이 높으나,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심인의 지도를 통한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.
 - * 참여 들은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('20.8.5일 시행된 보호법에 처음 규정) 되기 훨씬 전인 '14년부터 가명 처리를 하였고, 지침을 시달한 피심인 조차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, 상당수가 위반 가능성 있음
 - ^①피심인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추정될 뿐 참여 전체(여개)에 대한 **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**, ^②피심인의 지휘체계 아래 「 빅데이터 사업」에 참여하게 된 점(참여 시 평가점수 10점/ 점 가점) 등을 고려할 때, ^③ 법에 따라 **피심인의** 지도를 통해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종합 고려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가. 관련 법 규정

舊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·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舊 시행령 제29조의5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에 대하여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(1호)를 해야 한다."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舊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나, 참여 답당자가 인터넷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고 있음에도, 피심인이 아이디와 비밀 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은 舊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, 舊 시행령 제29조의5제1항제1호 및 舊 고시* 제6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된다.

*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(2020.8.11., 개인정보위 고시 제2020-2호)

2. 가명정보 처리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은 행위

가. 관련 법 규정

舊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

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 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舊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은 "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(1호),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항목(2호), 가명정보의 이용내역(3호)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(4호), 그 밖에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사항(5호)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, 피심인이 이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, 舊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.

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3. 11. 1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4. 1. 24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6호와 제6의2호, 舊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

舊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舊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및 제2항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적용하다.

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 원)		
ਜਹੂਲਜ		근기 답으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	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 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- P! MI/5か	600	1,200	2,400
머.	법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4항제6의2호	200	400	800

<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 2] - 과태료 부과기준 >

나. 과태료의 가중

「舊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위 2023. 3. 8. 이하 '舊 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(과태료의 가중)는 "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(600만 원)의 20%인 120만 원을 가중한다.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**기준금액(200만 원)의 10%인 20만 원을 가중**하고,

< 舊 과태료 부과지침 [별표 2] - 과태료 가중기준 >

기준	가중사유	가중비율	
위반의 정도	2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	기준금액의 30% 이내	합계 상한
윍봔	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	기준금액의 50% 이내	50% 이내

다. 과태료의 감경

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)는 "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 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은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,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므로,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[별표1] 감경기준에 따라 **기준금액(총 800만원)의 50%인 400 만 워을 감경**한다.

< 과태료 부과지침 [별표 1] - 과태료 감경기준 >

기준	감경사유		율
조사 협조	조사 협조 1.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 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	합계 상한
자진 시정	2.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	기준금액 40% 이내	50% 이내

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**기준** 금액(총 800만 원)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 원)			
위반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D=(A+B-C)	
제28조의4 제1항	법 제75조제2항제6호	600	120	300	420	
제28조의4 제2항	법 제75조제4항제6의2호	200	20	100	120	
합계		800	140	400	540	

2. 개선권고

피심인 주도로 진행되는 협력망 운용 관련 사안이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
- 가. 피심인은 참여 들이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 하도록 지도·감독하다.
- 나. 피심인은 가명정보 처리시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가명 처리 단계별 절차²)(사전준비→위험성 검토→가명처리→적정성 검토→안전한 관리 등 5단계)를 준수하는 등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*를 이행하도록 지도·감독하다.
 - * (예시) 가명정보 처리기록 작성·보관, 원본정보와 분리 보관, 가명정보 안전조치 및 재식별 금지, 내부관리계획 수립, '가명처리 단계별 절차' 이행,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 방침에 공개 등
- 다. 피심인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현황을 재검토하여, 관리자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'참여 소속 '와 각각의 들이 보유한 접근권한을 필요최소한으로 조정한다.
- 라. 피심인은 참여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.
- 마. 피심인은 가.부터 라.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²⁾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'24.2월) 10~38쪽